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조례 실태 분석 및 입법 대응 방안

◇ 본 보고서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상설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함.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표준조례안 수용을 지양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의정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통·리 단위로의 규모 하향, 행정 간섭을 차단하는 자율성 보장 그리고 유급 사무국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북형 주민자치회 입법 방향'을 제시함

I. 배경 및 목적

- 2013년 시범실시로 도입된 주민자치회는 11년 넘게 임시 기구로 표류해 왔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17조의2 신설)을 통해 상설 법정 기구로 승격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동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와 같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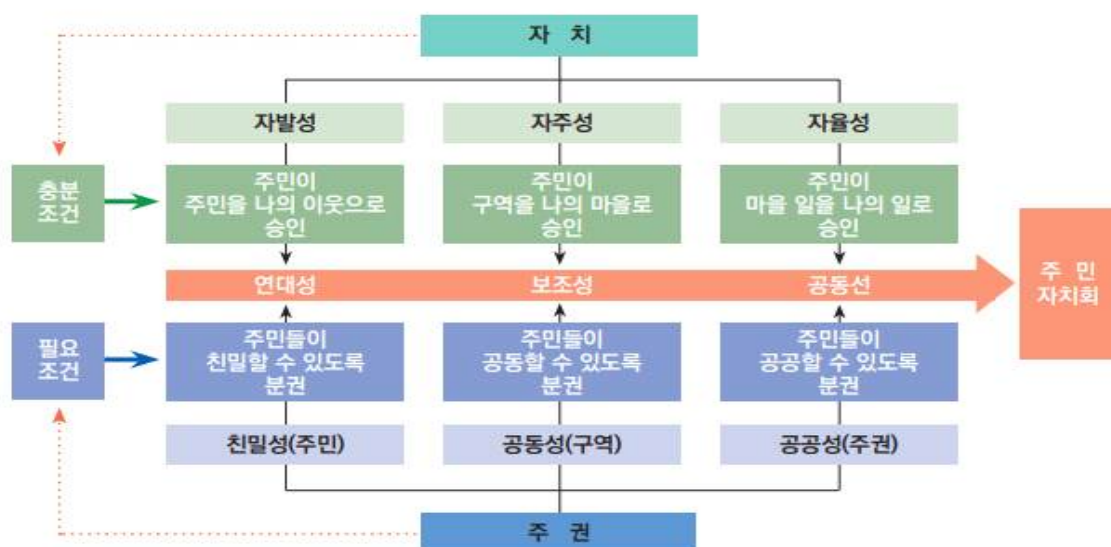
자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884호, 2026.03.01.(본회의 통과)

- 이는 일선 행정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실질적 자치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함
-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표준조례안'을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 자치 구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¹⁾
- 본 연구는 전북의 구조적 환경에 부합하는 조례 제·개정 방향과 실효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 이론적 배경 및 평가 준거

1. 주민자치 성립의 논리 구조: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 주민자치가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이웃과 마을을 인식하는 '승인(충분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권(필요조건)'이 상호 연동되어야 함
- 조선 시대 상민 중심의 자율 조직이었던 '촌계(村契)'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성공한 반면, 관 주도의 '주현·향약'은 통제와 지배로 귀결되어 실패했다는 역사적 교훈은 현행 조례의 제·개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자료: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1) 최용전, 석호용(2024). 자치법규 사전입법영향분석 사례연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2. 주민참여 사다리 이론을 통한 제도 진단

- Sherry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주민자치는 행정이 주민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단계를 넘어 기획과 의사결정의 권한을 주민과 나누는 '시민권력(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 단계로 도약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전북 내 14개 시·군의 대다수 조례는 행정의 일방적 지도나 형식적 공청회 등 '명목적 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음

1	2	3	4	5	6	7	8
			형식적 공청회와 집회				
		일반적 정보제공 대비 환류 미흡	아이디어 반영 후 다음 과정의 소홀				시민통제
	행정의 일방적 지도	환류와 협상의 기회 미흡과 정보만 제공	의견조사, 반사회, 공청회 정도 진행			권한위임	
공무원 일방적 교육과 설득	사회적 약자의 환자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제공	장식적 의례		파트너십		실질적 시민통제 수준
지역주의 중심형 자문위원회	약자의 문제 치유만 지원	주민은 자기 이익보호 기회 상실		회 유		주민중심의 우월한 결정권 행사	입안, 결정, 집행, 평가 단계에 참여
공무원의 가르침, 설득, 충고	미봉적인 구조적 해결 지양		협 의		최종결정권은 행정 대비 주민 협상유도	시민지배적 의사결정	공공계획이나 제도에 주도성보장획득
참가서명		정보제공		위원회 활동 대비 행정의 판단	시민과 힘있는자간의 협상하는 권력재분배	공공계획에서 시민결정권 부여	삶에 대한 직접 통제
	처 방			낮은 수준의 참여자의 영향력 행사	기획, 의사결정의 공동 협력과 책임	주민의 비토(veto)권 부여	
조 작				소수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	상의 기본원칙을 공유		
				소수자에 의한 다수결방식의 최종의사결정			
비참여단계		명목단계			시민권력단계		

자료: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 주민참여 사다리의 8개 가로대(Sherry R Arnstein, 1969)

3. 주민자치 9대 평가 요소 및 원칙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의 원리와 역할을 정의함

성공요인		개 념	대표 평가 정의
분야	요소		
주민 자치 기본 원칙	자발성	- 주민들이 내적인 자치동기 및 자치하는 즐거움 - 주민들이 자치인식, 자치동기와 자치권위를 갖고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것 - 주민들이 공동체를 행정에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감
	자주성	-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 하는 것 - 주민자치를 자주적으로 설계하는 것	- 주민들이 근린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는 것 -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집행함.
	자율성	- 스스로에 의한 규제를 말하며, 자유라는 토대 위에 성립되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으로 주민자치회 원칙을 정립하는 것 - 주민자치회를 자율과 책임 속에 숙성	- 마을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 - 주민들이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
주민 자치회의 운영과 기능	친밀성	-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인지적 밀착감을 말함 - 주민자치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협력을 촉진해 공동체 응집력을 높이고, 조직 간 협업과 혁신에 기여	- 주민들이 친밀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것 - 친밀성은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공동성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의 자원이나 공동의 이익 조건을 집단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실천을 말함	- 주민들이 공동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것 -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영역보다 마을 일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며 해결하는 것
	공공성	조직이 어떠한 주체이든 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헌신 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규범적 공공성)	- 주민들이 공공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것 - 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구역에서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을 갖고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보조성의 원리를 준수 하면서 공동선에 참여하는 것
주민 자치회의 역할	연대성	주민자치회의 작동 형식으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하는 것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혹은 타 기관이나 단체와 연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보조성	주민들이 연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로채거나 방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함	국가나 지방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자발, 자주, 자율성 발현
	공동선	- 주민자치회는 공동체가 아닌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

자료: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Ⅲ.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실태 및 구조적 한계

1. 전북의 현주소: 전국 최하위권의 평가점수

- 한국주민자치학회가 평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조례 평균 점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하여 입법적 혁신이 시급한 상황임. 전북 내 21개 조례중 66.6%(14개)가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관치 성격의 ‘주민자치 위원회형’ 조례이며, 이것이 도내 전체의 자치 수준을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

2)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 평가결과

<참고자료>

연번	구 분	조 례 명	기 타
★	본청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	전주시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별도
2	군산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별도
3	익산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별도
4	정읍시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별도
5	남원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설치 및 운영 조례	
6	김제시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	완주군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	진안군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규칙 별도
9	무주군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규칙 별도
10	장수군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1	임실군	임실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임실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순창군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도
13	고창군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4	부안군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별도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2026. 6. 25. 최종접속)

2. 미설치 지역의 구조적 제약 요인 규명

- 전국 지자체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설치 지역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도시화율, 인구 밀도,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임³⁾
- 이는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가 단순히 제도의 도입 여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지닌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3) 주민자치회의 미설치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단위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위해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인구·사회적 요인과 재정역량, 단체장의 의지 등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도출했다.(김지수 외, 2026).

- 즉, 전북특별자치도내 243개 읍·면·동 가운데 196개의 미전환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체제 유지)의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행정 실무를 감당할 젊은 인력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임이 학술적으로 증명됨 4)

3. '읍·면·동' 설치 단위의 면적 과대화 문제(Scale Mismatch)

- 현재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읍·면·동' 단위는 평균 14,500명에 달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포괄하기에 지나치게 넓음
- 근린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작은 규모 (500명~3,000명)가 적합한데, 현행 읍·면·동 규모는 이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임 5)

대한민국 주민자치 조례 성적표: 자치(自治)인가, 관치(官治)인가?



자료: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시군구 주민자치 조례 평가 결과" 재구성.

4) 전북일보 "주민 주권 시대" 전북도...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 키운다 (25.12.12.)

5) 조영민, 조성호(2025).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IV. 행안부 8차 표준조례안 분석 및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1. [조직] 설치 규모 하향 및 유연한 조례 설계(중층적 구조)

- 표준조례의 한계 및 대안: 표준조례는 위원 정수 하향선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주었으나 여전히 읍·면·동 구역을 전제로 함. 획일적인 읍·면·동 단위를 탈피하여, 생활권 기반의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리 단위 마을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함.⁶⁾ 각 마을자치회가 연합하여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층적 구조로 개편해야 농어촌의 넓은 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⁷⁾
- 향후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는 현행 읍·면·동 단위가 주민자치의 실질적 구현에 적합한 규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설치 범위를 통·리 단위까지 확장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적 자치기구'로서의 실질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운영권·자주재원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자치의 이념에 기초한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함

2. [인사] '생활인구' 개방 및 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수용

- 8차 표준조례의 진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여 전입 주민 및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했고, 읍·면·동장이 주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또는 선출했던 방식을 '위원선정위원회'를 삭제하여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함
- 전북형 입법 방향: 이번 주민자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주민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개정 해야 함

6)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26.6.8.)

7) 조영민, 조성호(2025).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3. [재정·지원] '유급 사무국' 및 '연계 법인' 도비 지원망 구축

- 8차 표준조례의 진전: 주민자치회의 숙원이었던 간사 및 사무국 설치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됨. 또한 자치계획을 의무화하고 이를 주민참여예산과 직접 연계하도록 함.
- 고령의 명예직 위원들만으로는 고도화된 행정·회계 실무를 감당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사무국장(또는 간사)'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도비로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설립한 연계 법인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및 마을 돌봄 사업' 등을 위탁받아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함.⁸⁾

<기존 조례 vs 전북형 모델 비교>

구분	기존 조례(관치 모델)	전북형 모델(실질 자치 모델)
설치 권한	시장·군수가 독점적으로 설치	주민의 자발적 신청과 총회에 의한 설립
설치 구역	읍·면·동 (행정 편의적 단위)	마을, 리, 통 (생활·친밀성 단위)
위원 선정	행정 주도 공개추첨, 의무 교육 강제	주민자치회 자율 선출 및 내부 선정위 운영
의사 결정	행정 보고 및 승인 위주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
자치 규약	표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종속	주민이 직접 제정한 자치규약의 우선권 보장
특별법 활용	일반 지방자치법 틀에 안주	전북특별법 지위를 활용한 선진적 자치권 구현

8) 유수동, 박현욱(2025).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을 통해.

V. 결론

-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⁹⁾
-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주민자치회 제도가 기존의 보조적 운영을 넘어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제도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신설과 8차 표준조례안 배포는 권력의 무게 중심을 행정에서 주민으로 이동하는 자치분권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에 해당함
-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고령화와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획일화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제도의 안착을 가로막아 부작용 초래함
-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조례 입법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① 생활권 단위(통·리)의 중층적 구조 체계 허용, ② 생활인구 포용과 선정위원회의 자율화, ③ 유급 실무 인력 및 연계 법인 설립 보장이 담긴 독자적인 [전북형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시·군에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9)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행안부).

참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구 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성격 /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범운영 및 광역·기초 조례 근거. 표준조례를 참고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운영. (자치조직/참여기구의 성격)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1999년 이후)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협의기구(행정정보조직·자문기구 성격)
설치 단위	읍·면·동 생활권 단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위
구성 / 정수	상·하한 삭제(예시형: 10명·20명·30명 이내 등 지역 자율로 구성). 다양성·대표성 고려 노력의무 유지	통상 20~30명 내외(지자체 자율). 이·통장 등 지역대표 중심 구성이 대표적
위원 자격	만 18세 이상 + 해당 읍·면·동 1년이상 거주(원칙). 외국인 포함 여부 등은 지자체 자율. 당연직 위원 운영 가능(지역 선택)	해당 읍·면·동 거주자 또는 사업자 주소지 대표 등. 공무원·지방의원 제외가 원칙. 거주요건·연령은 지자체별 상이
선정 방식	위원선정위원회 '둘 수 있음'(부활) 공개모집·추천 기반 선정(추천운영위 삭제). 예비후보 순위 자치회 결정으로 완화	동장·연합회 추천 + 공개모집 병행을 위원선정위원회가 심의·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 행정 비중이 큼
임기 / 연임·보선	지자체 조례 자율(통상 2년, 연임 허용) 보선 절차·예비후보 운용은 운영세칙/조례로 규율	통상 2년(연임 허용). 결원 시 행정 중심 보선이 일반적
의사 결정 장치	주민총회: 7차에서 의무→임의("개최할 수 있다")로 완화 자치(마을)계획: 의무→임의("수립할 수 있다")운영세칙 공개 의무 신설	주민총회 없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자문 중심 자치계획 부재. 운영세칙 공개 규정은 제한적
역할	주민자치업무(우선), 협의업무, 수탁업무, 생활권 의제 발굴·숙의·집행 연계,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문, 행정협조, 지역행사 지원 등 보조·자문 중심
조직 운영	간사·사무국 조문 삭제(7차). 필요시 조례·세칙으로 보완 분과·공동추진 등은 조례·세칙으로 자율화	간사 중심의 단순 체계. 분과 설치 가능하나 프로그램 운영 중심. 사무국 별도 규정은 드물
정보 공개·책임성	정보공개 조항 신설: 미공개 시 지자체가 직접 공개 가능. 운영세칙 공개 의무. 보조금법 준수(재정지원 시)	정보공개 규정 제한적. 보조금법 직접 준수 명시 드물. 책임성·공개성 요구 수준 낮음
대표성·포용성 장치	성별 편중 방지(10/6 초과 금지), 다양계층 참여 노력 유지. 당연직 허용으로 지역 특성 반영(균형 필요)	이·통장·단체장 등 직능 대표성 편중 경향. 성별·계층 균형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함
행정 개입 정도	제도 설계상 주민주도-행정지원 지향. 다만 선정위원회 설치·정보공개 요청 등 관리·책임성 장치 강화	행정주도-주민참여 보조 성격 강함 동장·행정조직 영향력 큼
핵심 지향	주민주권·생활자치 실현 플랫폼 (숙의·공론·집행 연계, 공개·책임성 강화)	센터 운영 자문기구 (프로그램·행정협력 중심, 자치권한 제한)

출처: 김지수, 허문영(2026).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표 1> 주민자치회(제7차 표준조례 기준)-주민자치위원회 비교

<참고문헌>

- 대한민국 국회 (20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4884호.
- 최용전, 석호용 (2024). 자치법규 사전입법영향분석 사례연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24(1), 87-116.
- 김지수, 허문영 (2026). 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40(1), 364-392.
- 조영민, 조성호 (2025).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9(3), 167-187.
- 유수동, 박현욱 (2025).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을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4), 5-39.
- 이현진 (2025). 주민자치회 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제도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4), 245-277.
- 이지은, 황태연, 이채영 (202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 (2025).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입법 쟁점. 「국정과제·정책현안 법제이슈 분석」, 25-8.
-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 (2026). 시군구 주민자치 조례평가 결과.
- 전북일보 “주민 주권 시대” 전북도...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 키운다 (25.12.12.)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25.6.8.)